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중 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157호 1998. 12. 29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25일이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40일이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1998. 9. 19, 법률 제5572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영 제3조 제2항”을 “영 제3조 제3항”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2인이상”을 “2이상”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법 제10조 제3항 단서”를 “법 제10조 제6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법 제1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

입가격을 신고하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를 “법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로 한다.

제4조의2 본문 중 “영 제9조 제5항 제1호”를 “법 제10조 제3항 제1호”로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 중 “25일이내”를 “40일이내”로 한다.

주택회보